

(우) 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7~8F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48 / 전송(02)790-8911  
보험정책국 국장 김기성(6574) / 보험팀장 백영기(6581) / 팀원 이연주(6548) / e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04713호

시행일자 2020. 7. 16.

수 신 각시도의사회장, 각전문과목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고시 일부개정 안내  
\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검사 관련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
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51호 (2020.7.16.)
-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-3155호 (2020.7.16.)

3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150호, 2020.7.15.)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하여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을 안내해온 바, 이를 전달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 바랍니다.

- 다 음 -

○ 주요내용 :

-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기준 신설
-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[실시간역전자증합효소연쇄반응] 검사의 급여기준 변경

○ 시행일 : 2020년 7월 23일부터

○ 관련 문의 :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☎ 044-202-2741

붙임 : 고시 개정문 및 급여기준 · 청구방법 안내 각 1부. 끝.

# 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